

삼성家 상속소송

- 상속재산의 실체와 소송효과

채이배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회계사)

요약

지난 2월 삼성그룹 고 이병철 회장의 장자인 이맹희씨(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부친)가 동생인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의 대상인 삼성생명 주식 등은 삼성특검이 상속재산으로 인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소송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는 삼성특검의 “차명주식이 모두 전대 상속재산”이라는 수사결과를 신뢰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이건희 회장이 명의전환한 주식, 그리고 상속소송의 대상인 삼성생명 주식 등이 모두 상속재산은 아니며 최소한 일부 비자금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매입한 주식이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삼성생명 차명주식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번 소송이 향후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다.

- 목 차 -

1. 사건의 발단과 진행사항
2. 소송의 진행
3. 삼성생명 주식의 실체
4. 이번 소송의 영향
 - (1) 삼성생명 지분구조에 미치는 영향
 - (2) 불뚝이 튼 KCC 등 삼성에버랜드의 주주

■ 문의 : 강정민 연구원 (☎ 02-763-5052) 파일 내려받기 : www.ser.or.kr



1. 사건의 발단과 진행사항

(1) 이맹희씨, 이건희 회장을 대상으로 상속재산 청구소송

지난 2월 12일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형인 이맹희씨가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고 이병철 회장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 및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맹희씨 측의 소장에 따르면 선대회장 사망 이후 재산을 동시에 상속인들이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나, 이건희 회장은 차명주식의 존재를 다른 상속인들에게 알리지도 상속절차를 진행하지도 않고 단독으로 이를 관리했다는 것이다.

이맹희씨는 이건희 회장이 상속받은 재산 중 본인의 상속지분 48/189를 주식 인도청구하였으며, 그 대상은 삼성생명 주식과 삼성전자 주식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이다. 이맹희씨가 이건희 회장 등에게 요구한 대상 주식은 다음과 같다.

<표1> [이건희 회장 등의 명의전환 주식 및 이맹희씨의 상속주식 인도청구의 내용] (단위: 주)

주주	주식종류	전환시점	실명전환분	상속주식수	청구분
이건희	삼성생명	1998년 12월	29,952,000	-	-
삼성에버랜드	삼성생명	1998년 12월	34,478,000	8,755,809	100
이건희	삼성생명	2008년 12월	32,448,000	8,240,761	8,240,761
이건희	삼성전자 보통주	2008년 12월	2,245,525	570,292	10
이건희	삼성전자 우선주	2008년 12월	12,398	3,148	10

* 삼성생명은 2010년 주당 액면가액을 5,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하였음. 이표의 주식은 액면 분할 후 주식 수를 기준으로 한 것임.

1) 삼성생명 주식

이건희 회장 등이 명의전환 한 삼성생명 주식 총 96,876,000주(분할 전 9,687,600주, 1997년 말 삼성생명 지분의 51.75%)은 3가지로 구분된다. 동 주식은 임직원 차명주식에서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의 명의로 전환되었으며, 삼성특검은 이것이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이라는 이건희 회장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었다.

명의전환 된 삼성생명 주식은 첫 번째 1998년 12월 주당 9,000원에 임직원으로

로부터 이건희 회장이 매입한 29,952,000주, 두 번째 같은 시점에 같은 방법으로 삼성에버랜드가 매입한 34,476,000주, 그리고 세 번째는 삼성특검 후 이건희 회장이 명의전환 한 32,448,000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이맹희씨는 이건희 회장에 대해 세 번째의 명의전환한 주식 중 법정상속 비율을 곱한 8,240,761주를 청구하였다. 한편, 첫 번째의 삼성생명 주식(1998.12. 이건희 회장이 명의전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 주식 중 15,000,000주는 1999년 7월 이건희 회장이 삼성자동차 부채처리를 위해 채권단에 증여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이맹희씨가 상속주식 인도청구에서 제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맹희씨가 삼성에버랜드를 대상으로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삼성에버랜드가 1998년 주당 9,000원에 매입하는 형식으로 명의변경한 삼성생명 주식이고 이병철 회장이 임직원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으로 상속재산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삼성에버랜드가 매입한 삼성생명 주식에 대해서는 '이건희 회장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리지 않고 삼성에버랜드가 매입하도록 함으로써 소유권이 침탈당한 상태이나, 주식의 명의변경 경위 등이 불분명하므로 일단 일부청구로 100주만을 청구'한 상태이다.

2) 삼성전자 주식

삼성전자 주식의 경우 이건희 회장이 삼성특검에서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던 부분으로 삼성특검 이후인 2008년 보통주 2,245,525주와 우선주 12,398주를 이건희 회장 명의로 전환하였다. 이맹희씨는 삼성전자 차명주식의 전체 내역 및 현재 상태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없어 일단 일부청구로 보통주와 우선주 각각 10주씩만을 청구한 상태이다.

2. 소송의 진행

1) 소송의 확대

이맹희씨의 소송제기 이후 형제들이 얼마나 소송에 참여할 것인가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2월 27일 이건희 회장의 누나인 이숙희씨도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이맹희씨와 동일한 방식으로 삼성생명 주식 약 2,232,000주를 포함해 삼

성전자 주식 등을 인도해줄 것을 청구하였다. 또한, 3월 28일에는 이건희 회장의 형인 이창희씨의 둘째 아들인 고 이재찬씨의 부인 최선희씨와 두 아들이 추가로 소송을 냈다. 반면, 한솔그룹의 이인희 고문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나머지 가족들은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 않아 소송제기는 일 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소송제기 이후인 3월 15일 이맹희씨는 1998년 삼성에버랜드가 명의전환한 삼성생명 34,478,000주와 2008년 이건희 회장이 명의전환한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위해 재판부에 2008년 삼성특검의 자료에 대해 증거 조사요청을 신청했다.

2) 법률적 쟁점

이번 소송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이맹희씨의 상속회복청구권행사에 대한 제척기간 문제일 것이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다.

이맹희씨 측은 이건희 회장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지 못했고, 2011년 6월 이건희 회장이 보낸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 서류를 통해 상속재산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이 유효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건희 회장은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가 2008년 4월 17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차명주식에 관해 언급했기 때문에 공동상속인들이 그때 상속권의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하므로 제척기간 3년이 도과됐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대해서 치열한 주장, 입증을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며 결국 대법원까지 가야 할 문제로 판단된다.

한편, 4월 27일에는 이건희 회장의 준비서면이 제출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동 준비서면에 이건희 회장은 이맹희씨 등이 인도를 청구한 삼성전자 주식에 대하여 상속받은 삼성전자 주식은 처분되었고, 2008년 명의전환한 삼성전자 주식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별도의 주식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과거 특검 당시 상속재산이라는 주장과 배치되는 주장이라며 문제제기를 하였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 측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의미는 상속으로 받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은 모두 처분하고 다시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했다는 것으로 특검에서의 진술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을 하였다. 아무튼 이건희 회장은 이맹희씨가 청구한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재산 자체가 아니라는 주장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맹희씨는 삼성전자 주식이 상속재산임을 밝혀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었고, 상속재산 여부에 대한 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3. 삼성생명 주식의 실체

삼성특검은 별도의 수사나 증거자료 없이, 다만 이건희 회장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차명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수사결과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경제개혁연대의 주장이 있었다.

삼성특검 수사결과에 나온 이건희 회장 등이 명의전환한 삼성생명 차명주식은 총 9,687,600주(액면분할 전, 1997년 말 삼성생명 지분의51.75%)이다. 그러나, 고 이병철 회장의 사망시점인 1987년 삼성생명은 신세계가 29%, 제일제당(현, CJ)이 23%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제외한 모든 주식이 차명주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분율은 48%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시점에 최대 48%의 차명주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삼성특검은 51.75%의 지분이 차명으로 있던 상속재산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당연히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의 오류로 인해 삼성특검이 "이건희 회장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의 근거가 되었다.

그렇다면, 명의전환한 차명주식의 일부는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결론이 도출되며, 상속 이후 차명주식이 추가로 발생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추정되는 차명주식은 어떻게 발생한 것인가? 그것은 고 이병철 회장 사망 후 1988년 9월 있었던 유상증자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1988년 9월 당시 삼성생명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주식 총수를 600,000주에서 1,200,000주로 늘렸으며, 이에 따라 신세계와 제일제당은 보유하고 있던 312,000주(a)에 대하여 동일한 주식수 312,000주(b)를 배정받았을 것이다. 이후 삼성생명의 무상증자로 a와 b의 주식 수가 각각 4,867,200주(312,000 X 15.6)로 증가되었다. 그런데 1997년 말 신세계 및 제일제당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가 4,867,200주뿐이므로,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 분(주식 b)은 실권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따라서 실권으로 증가된 주식 수 4,867,200주가 차명으로 관리되었다고 추정한다면, 특검에서 차명으로 밝혀진 총 9,687,600주 중 실권으로 인한 4,867,200주를 제외한 4,820,400주가 1987년 이병철 회장의 사망 이전부터 차명주식으로 있던 실제 상속재산으로 추정된다. 4,820,400주는 유무상증자 전으로 환원하면 154,500주가 된다. 이러한 추정을 근거로 차명주식의 발생 원인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표2> [삼성생명의 차명주식의 발생원인 추정]

1987년 상속시점	1988년 유상증자 후	1990년 무상증자 후
임원차명 추정주식 (154,500주)	1. 임원차명 기존주식 (154,500주)	4,820,400주
	2. 임원차명 주식의 유상증자분 (154,500주)	
신세계 및 제일제당 (312,000주)	3. 신세계 및 제일제당 기존주식 (312,000주)	4,867,200주
	4. 임원들이 인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세계 및 제일제당의 실권주 (312,000주)	4,867,200주
삼성특검이 차명주식으로 밝힌 주식수		9,687,600주

음영: 차명주식 - 1998년 및 2008년 명의전환 분 (액면분할 전 기준)

이러한 추정이 맞다면,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 주식은 1987년 임원차명 추정 주식과 그 주식의 유상증자 주식인 4,820,400주(=154,500주 X 2 X 15.6)로 축소되고, 신세계 등의 실권주 4,867,200주는 상속재산이 아니게 된다.

반면, 이러한 추정은 신세계 등이 실권한 주식이 모두 차명되었다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만약 이 중 일부만 차명주식이 되었다고 달리 가정한다면, 상속재산은 1987년 당시 차명주식의 최대치인 288,000(=발행주식총수 600,000 - 신세계 등 보유분 312,000, 앞서 설명한 48%)주가 1988년 유상증자(2배)와 1999년 무상증자(15.6배)로 늘어난 8,985,600(=288,000 X 2 X 15.6)주가 상속재산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세계 등의 실권주가 어떻게 처리되었느냐에 따라 이번 상속권 소송 대상이 되는 삼성생명 주식은 4,820,400주~8,985,600주로 달라질 수 있고, 이 건희 회장 입장에서는 최대한 삼성특검의 발표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또 다른 소송과정의 쟁점이라 할 것이다.

한편,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에버랜드는 1998년 명의전환 이전인 1987년에 이미 421,200주를 주당 9,000원에 매입하였다. 이 주식의 취득단가 역시 명

의 전환 주식과 동일하게 9,000원이므로 이 주식도 차명주식이 거래형식을 통해서 명의전환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고 이종기 회장(이병철 회장의 사위) 명의의 되어 있다가 2006년에 삼성생명공익재단으로 이전된 93,600주도 차명주식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를 모두 합할 경우 삼성생명의 총 차명주식 수는 10,202,400주(1997년 말 삼성생명 지분의 54.50%)로 증가되며, 상속권 소송 대상의 재산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4. 이번 소송의 영향

(1) 삼성생명 지분구조에 미치는 영향

삼성생명은 삼성그룹의 소유구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이재용 사장 등이 삼성에버랜드를 지배하고,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그리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및 삼성물산을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이중 하나의 연결고리라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삼성그룹의 소유구조 및 승계구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소송은 현재 소를 제기한 이맹희씨 등의 소송만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이맹희씨가 승소를 한다면 다른 상속인들에게도 여파가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소송에 참여한 이들 외에 다른 형제들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거나, 참여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소송을 제기한 이맹희 씨 등이 승소할 경우의 삼성생명의 지분구조를 예상하면 다음과 같다.

<표3> [삼성생명의 지분구조 예상]

(단위: 주, %)

	현재		이건희 대상 승소 삼성에버랜드 대상 패소		이건희, 삼성에버랜드 대상 모두 승소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이건희	41,519,180	20.76	31,046,546	15.52	31,046,546	15.52
삼성에버랜드	38,688,000	19.34	38,688,000	19.34	27,560,688	13.78
재단 (2개)	18,720,000	9.36	18,720,000	9.36	18,720,000	9.36
삼성계열사(4개)	3,284,940	1.64	3,284,940	1.64	3,284,940	1.64
임원	19,687	0.01	19,687	0.01	19,687	0.01
소계	102,231,807	51.12	91,759,173	45.88	80,631,861	40.32
이마트	14,762,667	7.38	14,762,667	7.38	14,762,667	7.38
CJ그룹(2개)	6,985,850	3.49	6,985,850	3.49	6,985,850	3.49
이맹희*	0	-	8,240,761	4.12	16,996,570	8.50
이숙희*	0	-	2,231,873	1.12	4,603,376	2.30
우리사주조합	8,222,476	4.11	8,222,476	4.11	8,222,476	4.11
기타주주	65,529,676	32.76	65,529,676	32.76	65,529,676	32.76

소계	95,500,669	47.75	105,973,303	52.99	117,100,615	58.55
자기주식	2,267,524	1.13	2,267,524	1.13	2,267,524	1.13
합계	200,000,000	100.00	200,000,000	100.00	200,000,000	100.00

* 삼성에버랜드가 명의전환한 주식에 대해서도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명의전환 주식 전부에 각 상속인별 상속분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 고 이재찬씨의 부인과 아들이 청구한 주식수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제외함

1) 이맹희씨가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에 대해 모두 승소하는 경우

이맹희 씨 등이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대상으로 모두 승소할 경우, 이건희 회장의 경우 5.24% 그리고 삼성에버랜드의 경우 5.56%의 삼성생명 지분이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총 10.8%의 지분이 감소한다 하더라도 이건희 회장 및 특수관계인은 총 40.32%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므로 삼성생명의 지배권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만 승소 한 경우

반면, 이건희 회장만을 대상으로 승소할 경우, 이건희 회장의 지분만 약 5.24%가 감소하여 이건희 회장은 15.52%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며, 삼성에버랜드는 여전히 19.34%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이 경우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가 되어 삼성에버랜드는 금융지주 회사에 해당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행 법률 상 삼성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가 될 경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삼성에버랜드가 지주회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가 되면 안 된다. 삼성에버랜드의 지주회사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①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이외에 삼성전자 주식 등을 매각하여 이 자금으로 상속재산 분배를 하거나, ② 삼성생명 주식으로 반환을 한다 하더라도 삼성에버랜드가 일정 지분을 매각하여 이건희 회장이 계속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면 된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생명 지분 이외에 삼성전자의 지분 3.38%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현시가 120만원을 기준으로 약 6조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반면 이건희 회장이 소송에서 모두 진다고 가정해도 이건희 회장이 반환해야 하는 삼성생명 주식의 가치는 약 1조원 규모로 이건희 회장이 0.6%정도의 삼성전자 주식을 팔면 충당이 가능한 수준이다.

(2) 불똥이 튄 KCC 등 삼성에버랜드의 주주

2006년 12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삼성카드는 삼성에버랜드 보유지분 중 5% 초과분을 2012년 4월까지 자발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삼성카드는 삼성에버랜드 지분 25.64%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중 17%를 2012년 1월 KCC에 매각하였으나, 3.64%의 초과분을 해소하지 못하였고 결국 감독당국으로부터 8월 16일까지 매각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현재 3.64% 지분은 삼성에버랜드가 자사주로 매입하는 것이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삼성에버랜드 기업가치의 상당부분이 삼성생명 주식의 가치라는 점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삼성에버랜드는 삼성생명 지분 19.34%(38,688,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1년 말 장부가액으로 3조1,299억원(주당 80,900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맹희씨가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는 34,476,000주 중 이맹희씨 등의 상속지분만큼 반환된다면 삼성에버랜드의 보유지분은 27,560,688주 감소하게 되고, 그에 상응하는 주식가치 약 9천억 원이 감소하게 된다. 2011년 말 삼성에버랜드의 자본총계가 3조7,743억 원이므로 약 24%의 순자산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상속소송 전의 삼성에버랜드 기업가치로 지분을 매입한 KCC는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현재 삼성에버랜드 지분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장학재단에게도 지분 매각가액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